

## 한국어교원 관련 국어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조문

국어기본법	국어기본법 시행령
<p>제19조(국어의 보급 등) 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동포(이하 “재외동포”라 한다)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및 자격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13조(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)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자(이하 “한국어교원”이라 한다)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<b>1. 한국어교원 1급</b> 한국어교원 2급인 자로서,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과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 부설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과정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(이하 “한국어교육경력”이라 한다)이 5년 이상인 자</p> <p><b>2. 한국어교원 2급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,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자</li> <li>나.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, 한국어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</li> <li>다.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, 한국어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</li> </ul> <p><b>3. 한국어교원 3급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,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자</li> <li>나.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,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</li> </ul>

국어기본법	국어기본법 시행령
	<p>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또는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되,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/p> <p>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교부한다.</p> <p>제14조(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실시)</p> <p>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(이하 “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.</p> <p>③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, 전 영역 평균 6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.</p> <p>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육 능력검정시험의 출제·시행·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비영리법인일 것</li> <li>2.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</li> <li>3.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</li> </ol>

국어기본법	국어기본법 시행령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칙</b>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한국어교원 자격부여에 관한 경과조치)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이 영 시행 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자로서 이 영 시행 후에 한국어교육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2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</p> <p>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거나 한국어 교육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3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</p> <p>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 영 시행 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등록하여 이 영 시행 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는 자로서 이 영 시행 후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3급을 부여할 수 있다.</p>

[별표 1]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(제13조제1항관련)

번호	영역	과목 예시	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		대학원의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	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 시간
			주전공 또는 복수 전공	부전공		
1.	한국어학	국어학개론, 한국어음운론, 한국어문법론, 한국어어휘론, 한국어의미론, 한국어화용론(話用論), 한국어사, 한국어어문 규범 등	6학점	3학점	3~4 학점	30시간
2.	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	응용언어학, 언어학개론, 대조언어학, 사회언어학, 심리언어학, 외국어습득론 등	6학점	3학점		12시간
3.	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	한국어교육개론, 한국어교육과정론, 한국어평가론, 언어교수이론, 한국어표현교육법(말하기, 쓰기), 한국어이해교육법(듣기, 읽기), 한국어발음교육론, 한국어문법교육론, 한국어어휘교육론, 한국어교재론, 한국문화교육론, 한국어한자교육론, 한국어교육정책론, 한국어번역론 등	24학점	9학점	9~10 학점	46시간
4.	한국 문화	한국민속학, 한국의 현대문화, 한국의 전통문화, 한국문학개론, 전통문화현장실습, 한국현대문화비평, 현대한국사회, 한국문학의 이해 등	6학점	3학점	2~3 학점	12시간
5.	한국어 교육 실습	강의 참관, 모의 수업, 강의 실습 등	3학점	3학점	2~3 학점	20시간
합계			45학점	21학점	18학점	120시간

[별표 2]

##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영역 및 검정방법(제14조제2항관련)

영역	배점		시간	방법
별표 1의 제1호	90	120	100분	필기
별표 1의 제2호	30			
별표 1의 제3호	150		150분	
별표 1의 제4호	30			
	300점		250분	
구술시험	합격/불합격			면접

[별지 제1호 서식]

제 호
한국어교원 자격증
이 름
주민등록번호
자 격
「국어기본법」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어교원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.
년 월 일
문화체육관광부장관 (직인)
1. 검정 종별 2. 법정 해당 자격기준 「국어기본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 자격기준 제 호 목 3. 수여 조건

210mm×297mm(보존용지(1종) 120g/m<sup>2</sup>)